

2018년 장기요양비용 수가변경 사항 안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질 향상,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대, 경중 치매대상 인지지원 등급 신설과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2018년 1월부터 장기요양비용수가 변동됩니다.

■ 장기요양서비스별 장기요양비용이 전체평균 11.34% 인상되었습니다.

(요양시설 : 9.87%, 주야간보호 : 10.01%, 방문요양 : 14.68%)

■ 장기요양 경중치매 대상자 확대(인지지원등급 신설)

■ 장기요양본인부담 경감혜택 확대

- 2017년-50%(기존 중위소득 50%이하)
- 2018년-60%(기존 중위소득 50%이하) 40%(기존 중위소득 50%이상)

□ 재가서비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급별 월 한도액 변경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준한도	1,387,500	1,223,500	1,152,600	1,082,600	926,600

□ 장기요양서비스별 장기요양비용 [2018년]

방 문 요 양 [15%]			주야간보호 (8~10시간) - 15%			시설(입소) 보호 [20%]		
분 류 [등급동일]	1일 수가	25일기준 [본인부담]	등급	1일수가	25일기준 [본인부담]	등급	1일수가	30일기준 [본인부담]
120분이상	35,200	132,000	1	53,390	200,210	1	65,190	391,140
150분이상	40,000	150,000	2	49,460	185,470	2	60,490	362,940
180분이상	44,220	165,820	3	45,660	171,220	3	55,780	334,680
210분이상	48,110	180,410	4	44,410	166,530	4		
240분이상	51,710	193,910	5	43,150	161,810	5		

□ 주야간보호 - 토요일과 공휴일 서비스이용시 장기요양비용은 30% 가산 됩니다.

방문요양 - 야간 18시이후 : 20%가산 공휴일은 30% 가산됩니다.

※ 주야간보호 20일(8시간이상)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한도액 50%범위내에서 추가산정가능

전화상담 및 문의 ☎453-6078 팩스 453-6079

무안군 해제면 현해로 1457-8 [용학리 용학교회 內]

☺해제용학복지센터☺